

1. 建築許可와 關聯된 複合民願處理에 관한 規程中改正令

國務總理訓領 第246號 1991年 2月 18日

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
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 2 조제 9 호 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
의 설치가능 여부”를 삭제한다.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